

민간보육시설 이용자를 위한 기본보조금 지원제도의 意義

이옥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선진 국가들이 부모에게 일과 육아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 인적 자원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취학전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정책방안을 강조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별 대책 없이 저출산 위기를 맞았다. 이제서야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정부의 육아지원 책무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게 된 것 같다.

국가의 육아지원에 대한 원론적 동의와는 달리 보육재정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좀처럼 육아 관련 전문가나 정책수립 관계자, 육아서비스 현장 종사자들간 합의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최근 육아예산 지출방식에 관한 논쟁의 핵심은 민간보육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과 관련되어 있다. 영아(만 0-2세 아동) 기본보조금은 2006년부터 이미 현장에 지급된 제도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보조금 제도는 생소한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종래의 보육재정 지원책 중 현장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만족스런 정책으로 평가된 점과 보육현장의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면 영아를 대상으로 한 기본보조금 지원을 유아(만 3-5세 아동)에게까지 확대 정착시키려는 목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해왔다. 가구소득별 차등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차등보육료제도가 대표적인 예다. 저출산 위기를 맞은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만으로는 육아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보다 보편적 보육료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차등보육료지원 외에 정부는 전체 보육시설의 5%와 10%를 각각 점하고 있는 국공립보육 시설과 법인보육시설에 시설별 종사자 인건비 등 보육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 15%의 시설을 정부지원시설이라 한다. 반면, 전체 시설의 85%에 해당하는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70%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 민간시설 이용자에 대한 비형평성 문제는 이용 아동의 부모는 물론, 민간보육현장 종사자 측면에서도 항상 불만이다. 대체로 정부지원시설은 부모가 지불하는 보육료가 저렴하면서도 서비스 질은 상대적으로 더 좋다. 정부의 지원이 있으므로 아동 1인당 보육에 드는 비용을 민간시설보다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에 자녀를 대기자로 등록해 놓고, 민간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면서 지원시설 입소 차례를 기다리는 부모들이 많다.

부모들은 집 가까이에, 과히 부담되지 않는 보육료를 내고, 질적 수준이 대체로 수긍할 만한 정도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어 한다. 현재로서는 바로 정부지원시설이 그런 시설이다. 흔히 국공립시설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부지원시설을 말한다.

문제는, 당장 정부지원시설이 부족하고, 질적 수준이 미흡한 민간보육시설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 국공립시설 증가 속도는 아무리 재촉해도 여러 연유로 느린다. 지금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국공립시설 확충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선,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민간보육서비스의 전반적 수준을 정부지원 시설 정도로 점진적으로 제고시킬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본보조금 지원은 우리나라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국공립시설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아동 한 명당 추가로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기본보조금제도는 민간보육의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현실화해야만, 그리고 최소한 정부지원시설 수준으로 비용을 현실화해야만 민간보육서비스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와 보육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정책이다.

기본보조금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은 민간보육시설의 도덕적 해이와 재정지출의 비형평성 문제를 지적한다. 기본보조금 지원이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보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은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온 국공립과 법인시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대다수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도덕적 해이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국공립 시설확충에 대한 요구가 크고, 수요자들이 이 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물론, 정부지원시설에 준하는 회계 관리의 투명성과 개방성, 운영 위원회의 활성화와 평가인증 참여 연계 등 기본보조금 지원조건을 엄격히 제시하여 민간시설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보조금은 소득별 차등지원이 아니므로 비형평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기본보조금보다는 차등보육료 확대가 더 형평성 있는 제도라는 주장이 있다. 차등보육료제도는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가구소득별 차등지원 되는 저소득층 우선지원 정책으로서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차등보육료 확대만으로는 민간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 이 주장은 사실상 지금의 민간보육서비스 수준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다. 차등보육료 확대는 이용자들에게 형평적인 지원책인 것 같지만, 미지원시설과 지원시설 이용자간의 고질적인 비형평성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동일시설 이용자들의 소득대비 보육료 지원의 형평성만을 고려한 것이다.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70% 이상의 부모들은 민간시설과 정부지원시설간의 서비스 수준과 이용료의 형평성을 더 원하고 있다.

이제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온 나라가 나서는 한편,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아동들에게 국공립 수준의 서비스를 가능한 빨리 제공하기 위해 시설운영자간, 이용자간 비형평성을 지속시켜온 지원제도를 보다 형평성 있고 보편적인 육아지원제도로 발전시킬 때다.